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등* 최근 연이은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 및 사회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음터널 및 데이터센터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투석병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 1) 이천시 관고동 상가화재(2022. 8. 5. / 투석병원, 사망 5명),
- 2) 성남시 판교 SK데이터센터 화재(2022. 10. 15. / 카카오 통신장애)

3.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에 “공동주택, 숙박시설 및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을 추가하고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7조제1항제6호, 별표 4 제1호마목2)나)

- 1) 영 별표 4에 따라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건축(신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려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행 규정상 연면적이 400㎡ 이상인 건축물만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되어 연면

적이 400㎡ 미만인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에 소방시설이 누락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입원실이 있는 의원과 유사하게 화재시 피난이 곤란한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추가함

* (대통령 지시사항 2022. 8. 5.) 이천 관고동 상가화재 관련,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문제를 확인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나.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의원에 “한의원 및 치과의원”을 추가함(안 제30조제1호)

- 1) 세종 밀양병원 화재(2018.1.26.)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을 의무화(2019.8.6.)하였으나 의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한의원 및 치과의원을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국가전문자격) 공직경력 특례 인정 폐지(안 제41조제2호 삭제)

- 1) 국가전문자격 공직경력 특례 인정 폐지 방침(국민권익위원회)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일부과목 면제 규정에 소방공무원 경력을 삭제함

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음터널과 데이터센터”를 추가함(별표 2)

- 1) 20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에서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사망 5명)와 관련,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2023. 2월/국토부·소방청)”에 따라 방음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함

※ (대통령지시사항 - 20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고가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

2) 2022.11.15. 성남시 판교 SK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카카오 디지털서비스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서비스 안전성 강화대책(2022.12월)”을 마련하였는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 용도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여 추가함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중 연면적을 바닥면적의 합계로 수정함(별표 4 제1호마목)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에 바닥면적의 합계와 연면적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연면적 = 바닥면적의 합계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부설주차장 면적이 제외되나,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에는 부설주차장이 포함됨에 따라 설치기준을 바닥면적의 합계로 통일하여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 하였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8.21.~9.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의원(입원실)”을 “공동주택, 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로, “·조산원·산후조리원”을 “·조산원·산후조리원, 숙박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12. 지하상가 및 터널

제30조제1호 중 “의원”을 “의원(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중전의 마목)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마목 중 “시설을”을 “시설 및 전기저장장치에 해당하는 2차 전지가 부설되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로 하며, 같은 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데이터센터

27. 지하상가 및 터널

가. 지하상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나.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수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과 지상에 건설한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말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가) 중 “(지하가”를 “(지하상가 및 터널”로 하고, 같은 1) 다) 및 같은 목 2)다) 중 “것 중”을 각각 “층으로서”로 하며, 같은 목 4)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지하가”를 “지하상가 및 터널”로 하고, 같은 호 라목6) 중 “바닥면적”을 “바닥면적의”로 하며, 같은 목 12) 중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를 “지하상가 및 터널 중 지하상가”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나) 중 “입원실”을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로 하며, 같은 2) 다), 같은 목 4) 및 8) 중 “연면적”을 각각 “바닥면적의 합계가”로 하고, 같은 호 바목3) 중 “면적이”를 “면적의 합계가”로 하며, 같은 목 5) 본문 중 “· 축전지실·통신기기실”을 “· 축전지실(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제외한다)·통신기기실”로 하고, 같은 목 7) 전단 중 “지하가”를 “지하상가 및 터널”로 하며, 같은 호 사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지하구 및 지하가”를 “지하구, 지하상가 및 터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3) 중 “지하가”를 “지하상가 및 터널”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4) 중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를 “지하상가 및 터널 중 지하상가”로 하고, 같은 목 10), 같은 호 라목4), 같은 호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자목 단서 중 “지하가”를 각각 “지하상가 및 터널”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3)라), 같은 호 다목1)나), 같은 호 라목3) 및 같은 호 마목2) 중 “지하가”를 각각 “지하상가 및 터널”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단서 중 “지하가”를 “지하상가 및 터널”로 하며, 같은 표 제5호가목5) 중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를 “지하상가 및 터널 중 지하상가”로 하고, 같은 목 6), 같은 호 나목4) 및 같은 호 라목3) 중 “지하가”를 각각 “지하상가 및 터널”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중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를 “지하상가 및 터널 중 지하상가”로 하고, 같은 목 3) 중 “지하가”를 “지하상가 및 터널”로 한다.

별표 5 제17호나목 중 “제5호가목6)”을 “제5호가목7)”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염대상물품에 관한 적용례) 영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의원 및 치과의원을 신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한의원 및 치과의원을 개설 신고 또는 방염대상물품을 교체하는 대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음터널에
「도로법」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은 이 영 별표 4에 따라 설치된 소
방시설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12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 등) ① 소방청
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
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
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
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
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그 구축·운영의 대
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
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
상물로 한다.

1. ~ 11. (생략)

12. 지하가(地下街)

13. · 14.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소
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

제12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 등) ① -----

-- 법 제12조제5항-----

1. ~ 11. (현행과 같음)

12. 지하상가 및 터널

13. · 14.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12조제5항-----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

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u>의원</u>,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 10. (생략) 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 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호의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생략) 2. <u>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과목</u> 3. (생략)	정소방대상물) ----- ----- ----- -----. 1. ----- <u>의원(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말한다)</u>----- 2. ~ 10. (현행과 같음) 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 ----- ----- -----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7522